

자금 운용 규정

제정 2023.11.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자금(적립금, 운영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특례규칙,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사업비 등 모든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2. “적립금”이라 함은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여타 목적을 위해 별도로 조성된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3. “단기자금”이라 함은 단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으로서 1년 미만의 현금성 자금 및 유동성자금을 말한다.
4. “장기자금”이라 함은 단기자금을 제외한 1년 이상의 자금을 말한다.
5. “직접투자”라 함은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금운용 담당부서가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간접투자”라 함은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외부 운용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익증권 등「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간접투자 중 “OCIO위탁 투자”는 외부의 자산운용자(Asset Manager)가 자산 보유자(Asset Owner)의 자금을 위탁 받아 자산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주는 전략적 일임위탁을 말한다.
7.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른 각 운용자산(또는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가진 대체투자안의 실현 수익률을 가리킨다.
8. “목표수익률”이라 함은 자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서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 (자금운용 부서의 준수 의무) 자금 운용 담당부서는 회계팀으로 하며,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적립금 투자운용지침 또는 자금운용지침서에 정한 기금운용담당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면책) 자금운용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자금운용관련 규정, 자금운용지침과 적립금 투자 운용지침 및 기타 기금운용담당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금을 운용 또는 위탁 운용 하였을 경우에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자금 운용 및 관리

제6조 (운용원칙) ① 자금의 운용은 유동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되, 안정성을 우선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② 단기자금의 운용은 수시 입출에 대비하여 적정유동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은 주어진 허용위험범위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되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거래 금융기관의 협약관계(MOU)와 지역금융 및 유관 지역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 (자금운용계획수립) 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 학년 초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장·단기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회계팀은 기획예산팀에게 적립자금 현황 및 당해연도 예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간 자금운용계획은 재무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안정성에 기반을 둔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3.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4.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
5. 중장기 자산 배분 안
6. 기타 자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무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① 장·단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운용성과를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수익률을 설정한다.

② 목표수익률은 금융시장의 여건과 전년도 운용실적 등에 기초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재무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정한다. 이때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기준수익률은 운용상품의 만기나 투자위험을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하며, 운용자산 또는 상품의 운용 성과를 사후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

제9조 (자산의 배분) 자금운용지침서 또는 적립금 투자지침서에서 정한 자산배분 범위 내에서 자산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기대수익률 및 위험에 근거하여 투자 상품별 최적 자산배분과 투자비율을 정하여 재무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

제10조 (금융기관 및 상품의 선정) ① 자금예치 및 투자기관의 금융기관 선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및 거래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
 2. 대학의 경영과 재무 운영에 따른 주거래 금융기관과의 MOU협약상황, 지역적 특수성, 거래 상품의 특수성, 정보제공 및 거래의 편의성 및 대학 기여도 등
- ② 자금예치 투자기관의 교체 여부는 제1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외부위탁운용) 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학은 적립금 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외부 자산운용 기관에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률, 운용한도, 운용대상 유가증권 등 위탁자

산 운용기준 등을 정하여 재무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③ 2항과 관련하여 교내 교직원과 자금운용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제 4 장 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주의의무

제12조 (위험관리 원칙) ① 담당부서는 자금 운용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운용자산의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고 이를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평가) ① 담당부서는 자금운용계획 등에 명시된 자산군 또는 상품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는 각 자산종류 및 상품별로 적절한 기준수익률을 설정한다.

③ 담당부서는 운용성과를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등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④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전문기관 또는 내·외부 전문가 위원회에 자문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담당부서는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23.11.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무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구성, 기능, 회의 등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본 규정제정 이전의 시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따른다.